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888
----------	-------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의자 : 김상희 · 이원택 · 임종성  
송재호 · 한정애 · 어기구  
황운하 · 유기홍 · 김철민  
최혜영 · 최기상 · 장철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11월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 간 영상편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8년 남북 각각 20편의 영상편지 시범 교환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약 25,000편의 영상편지가 제작되었으며, 2023년 2월 통일부가 발표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신 · 영상편지 등을 통한 소식 교류가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됨.

그러나 이러한 영상편지 교환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상편지 제작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특히 최근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이산가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생전 모습을 적극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남북 간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법적 근거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9조제1항).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서신교환”을 “서신(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환”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영상편지 제작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남한의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 영상편지를 제작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제작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제작 및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영상 편지 보관·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신교환”을 “서신 교환”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전문기관의 임직원
2.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영상편지 제작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1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① (생 약)</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생 약)</p> <p>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u>서신교환</u>,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p> <p>3. ~ 5. (생 약)</p> <p>③ (생 약)</p> <p><u>&lt;신 설&gt;</u></p>	<p>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u>서신(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환-----</u></p> <p>-----</p> <p>3. ~ 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8조의3(영상편지 제작 등) ①</u></p> <p><u>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 가족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남한의 이산가족의 신 청이 있는 경우 북한의 이산가 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영상녹 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 영상편지를 제작할 수 있다.</u></p> <p><u>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u></p>

	<p><u>영상편지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u></p> <p><u>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제작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 <p><u>④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제작 및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영상편지 보관·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u>서신교환</u>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 ⑥ (생략)</p> <p>제14조(별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통일부장관이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적십자사</p> <p>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① ----- ----- <u>서신 교환</u> ----- ----- -----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14조(별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	---

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 검사 전문기관의 임직원
2.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영상편지 제작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1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